[제3기 인구정책TF 과제]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합니다

2021. 9.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추진전략 ····· 4

Ⅲ.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 ····· 5

1. 기본적 권익 보호 ····· 5

2.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8

3.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 10

4. 포용적 보호체계 기반 마련 ····· 12

Ⅳ. 과제별 추진계획 ····· 14

Ⅰ. 추진배경

[노동시장의 과제] ❖ 고용형태 다양화와 기존 보호법제의 사각지대

1 **[고용형태 다양화 세계적 추세]** 글로벌 경쟁, 기술진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나타남

* 특히 디지털화는 극단적인 분업화와 거래비용 축소를 가능케 해 경영효율화 측면에서의 온라인플랫폼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새로운 고용형태 유형(Eurofound*, '20.) >

구분	정의(특성)	주요 분야	특징	우리나라
ICT기반 이동식 노동 (ICT-based mobile work)	·태블릿·노트북 이용 ·사업장 외부에서 작업	·ICT분야 ·전문·과학 분야 ·부동산, 금융	·높은 유연성, 자율성 ·장시간 근무와 적은 휴식시간	·원격근무
플랫폼 노동 (Platform work)	·온라인 플랫폼, 앱(App) 매개	·운송(택시·배달) ·가사서비스 ·사무, 데이터입력	·노동시장 접근성 ↑ ·높은 유연성 ·낮은 급여와 낮은 자율성 ·모호한 고용관계	·음식배달 ·대리운전 ·크라우드 워커
캐주얼 노동 (Casual work)	·불안정·단속적 노동 ·불명확한 작업량 (0시간 계약 등)	·농업, 관광, 간병, 소매, 오락	·간소한 채용절차 ·높은 일생활 균형 ·낮은 급여와 약한 사회보장	·일용 등
직원 공유 (Employee sharing)	·다수사용자+노동자 1명 ·공동 고용·관리	·회계, 관리, 상담, 관광, 공예, 무역, 제조, 금속	·고용·소득 안정, 노동관계법 보호 ·높은 작업강도 및 스트레스 ·불규칙한 근무시간	-
일자리 공유 (Job sharing)	·하나의 일자리+ 복수 노동자(주로 2인)	·교육, 돌봄, 금융, 행정	·높은 일생활 균형 ·경력개발 가능성 ·(업무조정 실패시) 높은 작업강도 및 스트레스	·시간제 근로
바우처기반 노동 (Voucher-based work)	·바우처를 통한 노무제공(근로계약x)	·가사서비스 ·농업·수산업·임업	·높은 유연성, 자율성 ·최저임금 보장 ·고용·소득 불안정 ·경력개발 곤란	·공공근로 ·바우처(사회서비스) -아이돌봄, 간병 등
협력적 고용 (Collaborative employment)	·종사자 간 협력체계 (협동조합 등) ·작업 공간 공유	-	·높은 일생활 균형 ·높은 유연성, 자율성 ·사회적 고립 감소 ·불명확한 고용상태 ·사회적 보호 미흡	·노동자 협동조합
임시 관리 (Interim management)	·주로 전문직 ·관리회사가 종사자를 다른 회사에 임대	-	·높은 유연성, 자율성 ·흥미로운 작업 내용 ·낮은 사회적 보호 ·직업적 고립 ·경력개발 곤란	·파견, 업무지원
포트폴리오 노동 (Portfolio work)	·다수 고객과 소규모 계약+동시 수행	-		

*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응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5년 주기로 보고서 발간

2 **[고용형태 다양화의 明暗]** 일하는 사람은 좀더 **자율성을 누릴 수 있고,** 기업은 **유연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나,

○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약화되고,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리나라의 상황] ❖ 다양화의 급속한 진전 + 대응 노력

1 **[다양화 현상]**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가 **빠르게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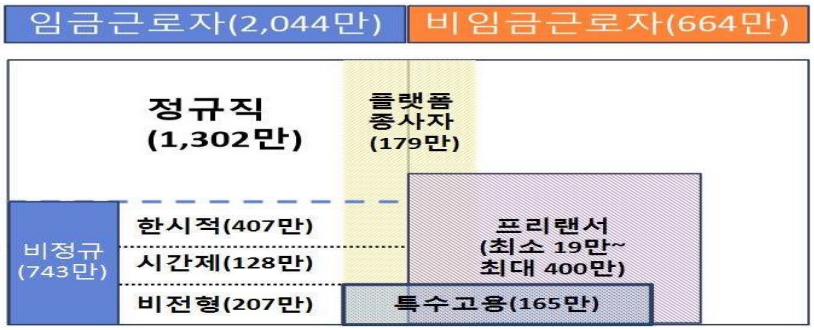

- ▲ **비정규직**: 경활부가조사('20.8.)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연구원('19.)
- ▲ **플랫폼 종사자**: 노동연구원('20.)
- ▲ **프리랜서**: 노동사회연구소('21.8.)

○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고용형태 다양화 현상은 심화되고,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기업들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노동환경 변화를 고용형태 다변화로 생각하고 있고, 유연근무제 성과가 높다고 판단해 코로나19 이후에도 확대 계획('20. 한국경제연구원)

<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노동환경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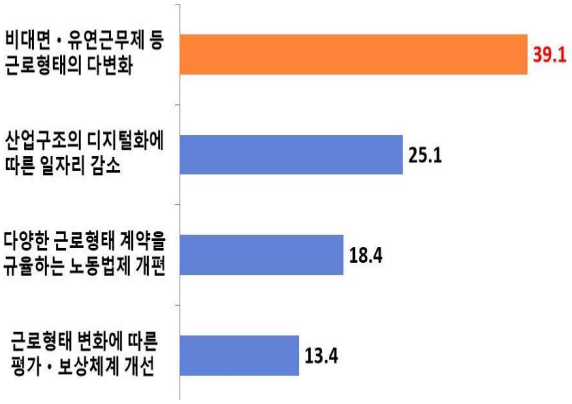

< 코로나19 진정 시 유연근무제 운영 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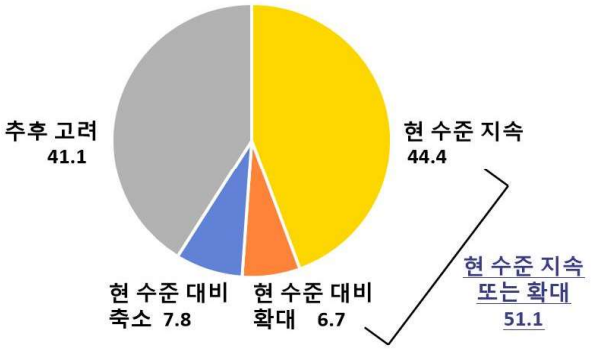

2 **[노동시장의 기회와 위기]** 디지털 기반 일자리와 비대면 일자리 증가 → 여성, 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

* 코로나19 이후 대면서비스 분야 취업자는 감소하나 비대면서비스 분야는 증가
취업자수(만명): **('19.1.) 대면 1,160 vs 비대면 710 → ('20.10.) 대면 1,130 vs 비대면 730**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실 및 소득감소 위험은 임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더욱 큰 타격**

* 고용률 증감('20.6. 전년동기대비, OECD): 근로자 전체 –1.3%p vs 임시직 –8.3%p
* 소득감소 확률: 비전형이 임시직과 시간제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남('20.10.)

3 **[그간의 노력 및 평가]**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질서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 **택배기사, 필수업무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도 정비 추진**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20.12.)

→ 택배·배달·가사 등 **직역별 법적 보호기반* 마련 성과**

* 생활물류서비스법('21.7. 시행), 필수업무종사자법('21.11. 시행), 가사근로자법('22.5. 시행)

○ 그러나, ❶다양한 고용형태 관련 **새롭게 제기되는 당면과제**, ❷**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과제**도 존재

❶ **(당면과제)**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택배·배달·야간작업자 등 비대면경제 종사자의 안전·건강 보호기제 등
❷ **(미래준비)**	고용형태 다양화 현상 심층 분석, 포용적 노동시장 여건 마련 등

☞ 이에 「인구TF 내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반***('21.3.~9)」을 구성,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총 14회) 등을 통해 **과제** 발굴

* 고용부 주관, 기재부·과기부·문체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 등 참여

[대응방향] ❖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

1 **[민간의 일자리 창출 동력 극대화]** 향후 일자리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기반 분야**에서 많이 증가*할 전망

* '05~'16년 사이에 나타난 일자리의 40%는 디지털 산업에서 창출('19. OECD)
* K-Digital Training,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민간의 디지털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중

○ 이에 법·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여 **불확실성과 갈등을 해소**할 필요

2 **[포용적 노동시장]** 새로운 일자리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이와 함께 **근로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확장**하는 **포용적 노동시장으로의 본격 전환도 착수**

II. 추진전략

비전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

추진전략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 기본적 권익 보호

1 법·제도적 기반 마련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 4법 추진
- 청소년 보호 협약 추진

2 일자리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 주요 정보 제공 등 정보 대등성 강화
- 고용형태 자문기구 운영

3 분야별 공정한 질서 마련
- 택배 분야 사회적 합의 확산
- 방송 분야 관행 개선

[일하는 환경 개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1 건강 보호
-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의무화, 심층건강진단 지원
- 플렛폼 종사자 괴롭힘 방지 및 휴식보장

2 물류종사자의 사고 위험 감소
- 안전배달시간 제시, 화물차안전운임제 운영방향 검토
- 이륜차 정비업 등록제 도입

3 일터개선
- 근무환경 개선 지원, 노사상생교육

[일자리 안전망 확충]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1 일하는 사람 안전망 구축
- 산재보험 보호 대상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2 맞춤형 복지확충
- 다양한 형태의 공제사업 추진
- 교통재해보장 보험 범위 확대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미래 노동시장 준비] 포용적 보호체계 기반 마련

1 기초통계 기반 마련
- 종사상 지위 분류 개편,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편 논의
- 조세·사회보험료 차이와 고용형태 관계 분석

2 포용적 노동시장 여건 마련
- 플랫폼 일자리 새로운 규칙 논의
- 노동법 체계 전반전 논의·검토

III.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

1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 기본적 권익 보호

◈ (문제점) 현행 법·제도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을 전제
→ 새롭게 나타나는 일자리 규율에 한계

☞ (추진방향)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일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정착 유도

* **(해외사례)** EU는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서면계약, 불확실한 작업의 거부 권한 등을 보장하는 입법지침 발표('19.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

[1]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 · 제도적 기반 마련

1 **(플랫폼 4법 추진)**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1.下 입법 → '22. 시행)

< **플랫폼 4법 주요 내용**(국회 상임위 계류 중) >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기업과 소속 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 확보, 기본적 권익 보호('21.3. 발의)
- **(직업안정법)**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에 주요 정보 신고 의무 부과('21.3. 발의)
- **(고용정책기본법)**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능력개발, 고용안정 등 국가·지자체 정책 추진 근거 마련('21.4. 발의)
- **(근로복지기본법)** 공제회의 복지사업 등 지원('21.4. 발의)

2 **(직종별 보호입법)** 가사 가사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사회보험 적용, 제공기관 인증제도입 등 가사근로자법의 차질없는 시행(하위법령 마련, ~22.上)

- **(노동법 적용)**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노동관계법 적용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보장)
- **(인증제)**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 부가가치세 면세,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등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 배달·퀵서비스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실시('21.7.)하여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운영 성과를 보아 **등록제 도입 검토**

*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배달·퀵서비스업 가능, 다만 인증받은 우수 사업자에게는 행·재정적 지원 및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가입 등 인센티브 부여

3 **(청소년 보호)** 배달업계 등에서 **부모 동의 의무화, 위험업무 부여 제한** 등 자발적 준수토록 **협약 추진('21.下), 법제화 방안 검토**

* 근로기준법은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부모 동의를 요구(제66조)하고, 위험한 업무 배제 등 권리를 보호

☑ **현장의 목소리**

▸ 계약체결 비율이 42.3%, 부모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빈번('21.3. 청소년유니온)
* 배달 등에서 부모 동의 없이 일하거나 명시적인 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

[2] 일자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1 **(정보 대등성 강화)** 종사자에 의한 **AI 알고리즘 규율**이 가능하도록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방안 마련(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 AI 알고리즘 등이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에게 AI 알고리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21. OECD)

○ 종사자에게 플랫폼 기업에 **일의 배정, 평가, 노동법 적용 여부 판단 자료** 등 **정보제공 요청권** 마련

○ **플랫폼 기업**에 **주요 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고지**(10일 전)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종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플랫폼 기업에 과태료 부과

2 **(고용형태 명확화)** **노사 등과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등으로의 오분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자문기구 운영방안 마련**('21.)

* **판단사항**: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형태 판단**(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 **플랫폼법 적용 시 쟁점 판단**(종사자의 정보제공 요청 시 기업 거부의 적정성 판단 등)

[3] 분야별 공정한 질서 마련

1 **(택배 사회적 합의 확산)** **주요4社** **분류인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21.下)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6.22.):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중소택배사** 사회적 합의사항이 확산될 수 있도록 소속 택배기사 노무제공 여건 **실태파악**(~'21.9.) → **안전·보건 조치 지원**

* 건강진단 비용 지원(1인당 약 6만원) 및 안전보건 기술지도(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비용 지원)

< 중소택배사 실태조사 결과('21.8.) >

- **(분류작업) 중소택배사 택배기사 62.1%가 분류작업** 실시(비용지급 등)
-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 47.6%, **적용제외 27.9%, 입직신고 미실시 24.5%**
- **(건강검진)** 1년 주기 건강검진 실시 택배기사 44%

○ **마트배송기사** 업무량이 급증한 배송기사의 노무제공여건 등 **실태파악('21.下)** → **업계의 자발적 개선 위한 협약** 체결 추진('21.)

☑ **현장의 목소리**

- "배송상품 무게와 상관없이 똑같은 1건으로 취급되는 점이 부당합니다."
- "일하는 도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마트배송기사가 온전히 지며,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모든 치료비를 감당해야 합니다(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 토론회, 8.11.)

2 **(방송분야 관행 개선)** **인터넷방송** **「플랫폼-크리에이터**(유투버 등) **상생 가이드라인*」('21.3.)**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행 상황 점검**('21.下)

* 서면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사전고지, 부당한 계약 강요 금지 등 계약 공정성 강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콘텐츠 추천 시 차별 금지 등 콘텐츠 유통 투명성 확보

○ **방송작가** **지상파 방송사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성 인정 시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 추진(근로감독 중 '21.5.~)

2 [일하는 환경 개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문제점) 디지털 기반 일자리는 업무의 특성상 안전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 업무 급증으로 인한 과로 문제도 직면

– 불명확한 고용관계, 물리적 작업장의 부재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 多

☞ (추진방향) 건강과 안전은 시급히 보호되어야 할 영역으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의 확대 적용과 자율 개선을 위한 지원 병행

[1] 건강 보호

1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의무)** 現 산안법령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택배기사 등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의무화** 추진

○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재기금으로 지원***

* '21.3월부터 3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배달·대리), 환경미화원 대상 비용지원 사업 신규 추진 중('21년 예산 33.5억원, 59,000명)

2 **(과로 위험 감소)** **장시간 노동·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 심층건강진단 지원*

* '21.6월부터 신규 추진 중('21년 예산 32.8억원, 15,000명)

3 **(플랫폼 일자리의 괴롭힘 방지)** **소속업체**의 괴롭힘 금지, **고객 등의 괴롭힘 방지 및 예방·사후조치 의무 부과**(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 현재 플랫폼 종사자 중 근로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 적용(근로기준법)되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 보호 한계 → **모든 플랫폼 종사자로 적용 확대**

< 플랫폼 종사자 괴롭힘 방지(안) >

- **(괴롭힘 금지)** 소속업체는 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및 괴롭힘 등 금지
- **(예방조치)** 고객, 다른 플랫폼 종사자 등이 괴롭힘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 **(사후조치)** 소속업체는 괴롭힘 발생시 조사,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 시행

4 **(휴식보장)** 플랫폼 종사자의 적정한 휴식보장 조치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작업시간, 연속 작업 제한 등 최소한의 조치 마련('21. 연구용역 실시)

[2] 택배 · 배달 등 물류업무 종사자의 사고 위험 감소

1 **(사고예방)** 배달기사 사고 위험지역 알림 등을 위한 **정보공유플랫폼**(Open-API)에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적정 시간 제시**('22.上)

* (現) 사고발생 위험지역 및 안전교육영상 송출 → (改) 다양한 요인(도로, 도심·비도심 구분, 날씨, 교통량 등) 고려한 **안전배달 산출기준 개발·탑재**

○ 배달기사 뿐만 아니라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한 안전 운행 정보제공 등 추진('22.下)

2 **(안전운행)**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정착으로 과속 방지 등 시행성과 토대로 **향후 운영방향*** 검토(3년 일몰제, '20~'22.)

* ❶일몰제 이후 제도 지속 시행여부 결정, ❷지속 시행시 적용품목 확대여부 결정 ❸안전운임제를 통해 다단계 운송거래구조·과도한 주선수수료 해소방안 모색 등

3 **(이륜차 정비 전문성 제고)** 이륜차 정비 자격증 신설 검토('22.) → 정비업 등록제 도입(現 자유업, '22.)

[3] 일터 개선

1 **(근무환경 개선)** 플랫폼 기업 및 소속업체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시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22년 신규)

* (예시) 지역기반 플랫폼 종사자(배달·대리운전·가사)의 휴식·대기공간 마련
웹기반 플랫폼 종사자(번역·IT)의 공유 작업 공간 등 마련

2 **(노사 상생 교육)**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와 기업 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

* (예시) 업종별 노사관계 발전방안 등을 기업 인사노무담당자와 종사자 대상으로 맞춤 교육

3 [일자리 안전망 확충]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 (문제점) 고용관계의 불명확성 등으로 사회적 위험을 종사자가 온전히 부담

–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이 전통적 형태의 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나지만, 근로자 중심의 사회안전망은 이들을 위한 지원에 한계

☞ (추진방향)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 구축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코로나19 종식 후 이를 기반으로 생산성에 부합하는 노동력 재배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촉진 가능('20.8. OECD 한국경제보고서)

[1] 일하는 사람 안전망 구축

1 **(일하는 사람 산재보호)** 산재보험 보호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

○ **(전속성 폐지)** 現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 적용직종(15개)임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약 50~73만명) **보호**('21.下 법개정안 발의)

- 이와 함께 **산재보호가 시급한 직종은 별도 검토*·확대**('22.7~)

* 재해 위험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요구가 높고 現 특고 적용방식(기준보수)으로도 관리가능한 직종 우선 검토(마트배송기사, 유통기업 물류전담기사 등)

○ **(가입누락 최소화)** 특고 적용제외 사유제한('21.7.~)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사업주·종사자** 대상 **한시적**(예: 1년) **보험료 경감**

* '21.7월부터 6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보험료 1년간 경감 중(신규입직자·재적용자 및 기 적용자 모두 50% 동일)

2 **(전국민 고용보험)**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적용 로드맵 이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21.7월부터 12개 직종 적용 ▲저소득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 ▲'22.7. 추가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진행(~'21.下)
플랫폼 종사자	▲'22.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적용 ▲플랫폼 기업 보험사무대행 비용지원('22.),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경사노위에 노·사, 전문가 등 참여 연구회 구성('21.下)

3 **(한국형 상병수당)** '22년 시범사업 추진('21. 사회적 논의(자문委)+연구용역)

[2] 맞춤형 복지 확충

1 **(다양한 형태의 공제사업)** 사고 시 손해 배상 등을 위해 **소화물 배송 대행 공제조합 설립방안** 연구*(~21.9.), TF 운영('21.5.~) → 설립 추진('22.)

* (주요 내용) 배달산업 현황 파악, 공제조합 설립·운영 기본구조 마련, 초기자본금 확보, 공제조합 가입률 유지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 연구

○ 플랫폼 기업 외 종사자의 **자율적 공제사업 지원 근거** 마련 검토

2 **(복지사업 확대)**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대상을 플랫폼 종사자로 확대 →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용보증지원** 등 **복지사업 지원**

3 **(재해 보장)** 대리기사 등 플랫폼 활용 4륜차 기사의 **교통재해 보장 보험**("우체국나르미 안전보험*")을 **이륜차 기사까지 확대**('21.9.)

*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뿐 아니라, 중환자실 입원, 중대 수술까지 보장

[3]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1 **(국민 직업훈련)** 고용형태와 무관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직무훈련을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무기초 능력** 개발까지 **확대**(현재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 위주 제공)

- 직업훈련 外 **경력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등 **심층 경력설계** 추가 지원('22년 시범사업),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제공 검토**('22)**

* 산업안전·권익보호 및 직무전문성 향상 내용을 필수교과로 편성
** 시범사업 운영('21.7.~) → 훈련성과·실적 등 점검 후 사업 지속여부 검토(~'22)

2 **(맞춤형 취업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마련('21. 연구용역 → '22. 「특고 취업전담반」 운영 추진)

* 실업급여 수급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대상 심층상담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센터 집중알선, 他 기관 연계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

4 [미래 노동시장 준비] 포용적 보호체계 기반 마련

◈ (문제점) AI 기술 등 발달로 일자리가 대체되는 효과보다는 업무수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커 고용형태 다양화는 필연적('19. ILO)

* 10년 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코노미스트)

☞ (추진방향) 다양화 현상을 심층 분석하고, 현 제도를 근본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여 고용형태 다양화 시대에 부합하는 체계 마련

[1] 기초통계 기반 마련

1 **(종사상 지위 분류)** 임금-비임금 기존 분류 체계에 지휘권한(독립, 의존)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종사상지위 분류 개정**('21.12.)

* 실제 통계작성은 기관 자율적인 검토 후 단계별 적용

< 주요 개정 사항 >

현 행	개정		
종사상지위 분류	경제적위험(economic risk) 유형		지휘권한(authority) 유형
Ⅰ. 비임금 근로자 1. 자영업자(고용원有) 2. 자영업자(고용원無) 3. 무급가족종사자	**Ⅰ. 이윤목적 취업자(비임금)** 1. 개인기업 독립취업자 2. 의존계약자 3. 무급가족종사자	or	**Ⅰ. 독립 취업자** 1. 고용주(고용원有) 2. 자영업자(고용원無)
Ⅱ. 임금 근로자 1. 상용근로자 2. 임시 및 일용근로자	**Ⅱ. 임금목적 취업자(임금)** 1. 법인소유 경영자 2. 임금근로자(세분화*) * 기간無, 기간고정, 단기임시, 유급견습		**Ⅱ. 의존 취업자** 1. 의존계약자 2. 임금근로자(세분화) 3. 무급가족종사자
*** 기타 종사자**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그 외 종사자			

2 **(비정규직 통계)** 고용형태 다양화 추이를 고려하여 **비정규직 범위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편 논의 지속**

< 통계 개편 논의 필요 사항 >

구 분	현 행	논의 필요사항
비정규직 범위	▲ 가정 내 근로	▲ 재택근무 확산 경향 고려, 재검토
	▲ 시간제 근로	▲ 시간제근로의 다양성 고려, 재검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의존계약자 신설 등 고려, 재검토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임금근로자 대상 조사	▲ 특고 범위 과소추산 ▲ 의존계약자 별도 조사

3 **(조세·사회보험료)** 고용형태에 따른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의 차이가 **고용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21.下.)

* OECD 국가 중 근로자-자영업자 간 조세격차가 큰 나라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편

< OECD 근로자-자영업자 조세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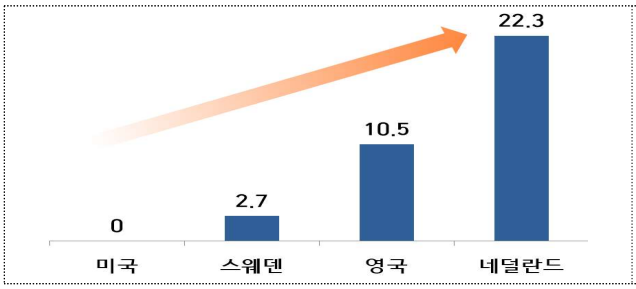

<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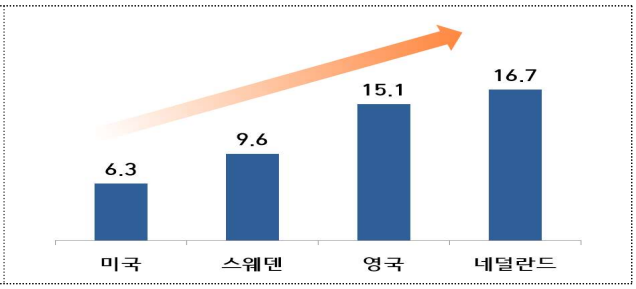

[2] 포용적 노동시장 여건 마련

1 **(사회적 대화)**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 분쟁 해결 방안 등 **플랫폼 일자리의 새로운 규칙 마련 논의** 지속(경사노위, '21.6.~)

< 플랫폼산업위원회('21.6.~'22.6.) >

- **(구성)** 노사 각 3인, 정부(고용부, 기재부, 과기부), 전문가 6인
- **(논의과제)** 종사자의 기본적 권리 향상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투명하고 공정한 플랫폼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등

〈논의 주제(안)〉

❶ **분쟁해결:** 자율협약 vs 사회적 대화 vs 제도적 분쟁해결기제 마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해외사례) 덴마크, 이탈리아 등은 '18년부터 산업내 전체 기업이 아닌 시장지배적 기업과 중심 협약 체결하고 이를 전체 산업으로 확산하는 방식 시도

❷ **직업훈련** : 직업훈련 실시 주체(종사자단체 vs 플랫폼社 vs 업종·직종별 단체)

2 **(現 노동법제 체계 전반적 논의·검토)**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기준 관련 **법체계·내용**에 대한 **논의·검토**

○ **노동시장 변화 추이** 분석, **종사자 보호체계 구축** 등 **정책제안**을 위해 **고용형태 다양화 대응센터 신설* 검토**('22년 시범운영)

* (해외사례) Eurofound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응하고,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해 시장분석·사례연구 등을 통해 「New forms of employment」 보고서를 발간 중

Ⅳ. 과제별 추진계획

주요과제	담당부처	추진시기
1.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 기본적 권익 보호		
1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플랫폼 4법 추진	고용부	’21.下.
▸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마련 등	고용부	’22.上.
▸ 소화물배송 사업자 등록제 도입 검토	국토부	’22.~
▸ 청소년 보호	고용부	’21.下.~
2 일자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정보 대등성 강화	고용부	’21.下.
▸ 고용형태 자문기구 운영방안 마련	고용부	’21.下.
▸ 배달업 공정거래 기반 마련	국토부	’21.上.
3 분야별 공정한 질서 마련		
▸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국토부 고용부	’21.下.
▸ 중소택배사 실태파악 및 안전·보건조치 지원	국토부 고용부	’21.下
▸ 마트배송기사 실태파악 및 협약 체결	고용부	’21.下
▸ 인터넷 방송 분야 점검	방통위	’21.下
▸ 지상파 방송사 방송작가 점검	고용부	’21.下

2. (일하는 환경 개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1 건강 보호		
▸ 고위험 특고에 대한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의무화	고용부	’21.下.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종사자 심층건강진단 지원	고용부	’21.下.
▸ 플랫폼 일자리의 괴롭힘 방지	고용부	’21.下.
▸ 플랫폼 종사자 휴식보장 조치 의무화 등	고용부	’21.下.
2 택배·배달 등 물류업무 종사자의 사고 위험 감소		
▸ 정보공유플랫폼 개편 및 확대	고용부	’22.~
▸ 화물차 안전운임제 운영방향 검토	고용부	’22.~
▸ 이륜차 정비 자격증 신설 검토 등	국토부	’21.~
3 일터 개선		
▸ 근무환경 개선	고용부	’22.~
▸ 노사상생교육 실시	고용부	’22.~

3. [일자리 안전망 확충]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1 일하는 사람 안전망 구축	-	-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고용부	‘21.下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	고용부	‘21.下~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복지부	‘22.~
	2 맞춤형 복지 확충		
	▸ 소화물 배송대행 공제조합 설립	국토부	‘22.~
	▸ 근로복지기본법 개편 추진	고용부	‘21.下~
	▸ 우체국나르미 안전보험 확대	우본	‘21.下
	3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체계 구축	고용부	‘22.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제공 검토	고용부	‘22.
	▸ 특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부	‘22.
4. [미래 노동시장 준비] 포용적 보호체계 기반 마련			
	1 기초통계 기반 마련		
	▸ 종사상 지위 분류 개편	통계청	‘21.下
	▸ 비정규직 범위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편 논의	고용부	‘22.
	▸ 조세·사회보험료 차이와 고용형태 선택 간 관계 분석	고용부	‘21.下
	2 포용적 노동시장 여건 마련	-	-
	▸ 플랫폼 일자리 규칙 마련 논의	고용부	‘21.下
	▸ 근로기준 관련 법체계 논의·검토	고용부	‘21.下~